2014 전북여고 모의국제회의
The Third Jeonbuk Girls' Highschool Model International Conference

의장단 리포트

안전보장이사회

군비축소를 위한 국제사회 협력 공조

1. 위원회 소개

본 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로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의 주요 기관 중 하나이다. 본 위원회는 5개의 상임이사국(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10개의 비상임이사국(2년을 임기로 총회에서 선출- 아시아·아프리카 5석, 동유럽 1석, 중남미 2석, 서유럽 및 기타 2석)으로 구성된다.
본 위원회는 국제적 마찰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분쟁 또는 사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분쟁의 조정 방법 및 해결방법을 권고한다. 또한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권고 또는 강제 조치를 집행한다.
의제 결의 시, 상임거부권제도에 따라 상임 이사국의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며, 본질적 사항 결정에 있어서는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하는 9개국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본 위원회의 결정은 국제 연합 헌장에 의거하므로 회원국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

의장: 김예지 (2-3)
부의장: 노근영 (1-5)

본 위원회는 15의 대표단과 1명의 의장, 1명의 부의장, 2명의 스태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논의하게 될 의제는 다음과 같다.

군비축소를 위한 국제사회 협력 공조

본 의제는 회의의 바탕이 될 것이며 모든 대표들은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한다.

본 위원회에서는 과도하게 지출되어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를 통제, 나아가 군비축소의 진전을 목표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 본 회의에서는 군비경쟁에 따른 무기의 생산, 개발 및 거래만을 군비 통제의 대상으로 설정한다. 무기는 핵무기,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와 지뢰 및 경·소형무기와 같은 재래식 무기를 논의범위로 정하되, 핵무기를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다. 즉 무기의 양, 질적 비확산을 통한 군비 통제 실현이 본 회의의 의도이다.
본 위원회는 군비축소가 발전, 인권, 평화와 불가분한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고 국제 안보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 의제 배경

지난 세계 2차 대전 이후, 국제사회에서 다자간에 군비 통제 및 군축협상이 제도화 되는 양상을 보였고 이에 따라 군축회의(CD), 유엔군축위원회(UNDC)에서 협상포럼을 진행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가 발표한 연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세계 172개국 군비 지출 총액이 1조 7470억 달러(약 1808조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1.9% 감소한 수치이나 2007년경 총액이 1조 3400억 달러였음을 감안한다면 결코 성과로 판단될 수 없다. 이렇게 지금까지의 군축회의는 위와 같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선진국 위주라는 지적을 받은 채 여전히 국제사회의 숙제로 남아있다.

국제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군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첫째, 국가 간 무기거래량의 증가로 인한 군비 증가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의 보고서를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무기 거래가 2002~2006년 5년 기간과 2007~2011년 최근 5년 기간을 비교했을 때 24% 증가했다.
무기거래의 흐름은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다. 군비지출에서 상위권에 위치하는 선진국들이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군비를 삭감하자 위처럼 세계 군비 지출 총액이 1.9% 감소됐지만, 상대적으로 금융위기의 영향을 덜 받는 개발도상국이 이를 이용하여 선진국과의 무기거래를 증가시켰다. 그 결과 주요 개발도상국의 군비 증가율은 100%를 넘어갔고, 이는 실질적 군비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면서 그 필요성을 상기시킨다.

둘째, 국가 간 과도한 무기 경쟁으로 인한 군비 증가이다.
이는 동북아의 최근 정세를 예로 들 수 있다. 패전 후 69년 만에 전쟁할 권리를 선포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일본과 이에 맞서 신무기 개발에 40조원을 투자한 중국이 과열된 군비경쟁을 펼치고 있다. 동북아 국가들이 모두 세계 10대 군비 지출 국에 포함됨을 고려했을 때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른 예로는 파키스탄과 인도 간의 핵무기 개발 경쟁을 들 수 있다. 역사적 종교적으로 앙숙이었던 두 나라는 군비 증가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며 앞 다투어 핵실험을 진행했고, 핵보유국이 되었다. 두 나라 간 군사적 충돌이 잦고, 핵이라는 위험요소가 상시 존재하기 때문에 역시 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무기의 사용으로 인해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되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핵무기 피해사례의 경우, 세계 2차 대전 당시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해 히로시마에서는 인구 33만 명 중 30만 6천여 명, 나가사키에서는 인구 27만 명 중 24만 4천여 명이 사망, 부상, 행방불명 등의 피해를 입고, 피폭 도시 전체의 건물들이 파괴 되었다. 핵에너지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핵은 한 국가를 완전히 몰락시킬 수 있을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현 사회에서도 핵무기를 테러리스트가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 핵보유국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가능성 등 많은 위험이 잔존해있다.

핵무기 이외에도 재래식 무기로 인한 피해 역시 심각하다. 약 6억 4,000만 개의 등록된 소형화기은 대부분 민간인들의 소유 하에 있고 합·불법 거래를 포함하여 50억 이상의 거래가 매년마다 이루어지는데, 이 무기들이 전쟁 과정과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의 일부를 빼앗아가고 있다.
화학무기 또한 1300여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시리아내전과 같이 최근까지 각종 내전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비교적 저렴하고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안보를 위협하는 큰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위와 같이 인적 물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무기들의 과도한 거래와 개발로 인해 군비 증가가 초래되고 안보가 위협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의 여지를 갖고자 본 의제가 이번 회의의 의제로 설정되었다.

3. UN 조처

유엔은 창설 이후, 군축과 무기제한을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왔다. UN은 대량살상무기(WMD)와 재래식 무기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군축·비확산 활동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UN은 총회(본회의, 군축특별총회, 총회. 제1위원회), 안전보장이사회, 군축위원회(DC : Disarmament Commission), 군축국(Department of Disarmament Affairs),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 군축문제연구소(UNIDIR) 등을 두고 군축·비확산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제1차적 책임을 지는 UN 주요 기관으로, 대표적 군축 조약인 핵확산 금지조약(NPT)을 1970년에 발효 시켰다.
제네바 군축회의(제네바CD)는 군축 문제를 전담해서 다루는 여러 유엔기구 중 대표적인 것이다. 군축협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유일한 다자간 협상 포럼으로써, 성공적으로 화학무기 협약과 포괄적 핵 실험 금지 조약을 이끌어 냈다. 제네바 군축회의의 생물무기 조약은 1975년, 화학무기 조약은 1997년에 각각 발효가 되었다. 또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the Comprehensive Nuclear-Test- Ban Treaty)은 1996년에 채택되었으며, 지뢰금지 조약이 1999년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 외에도 1978년과 1988년에 군축을 위한 특별 세션을 개최하는 등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군축 관련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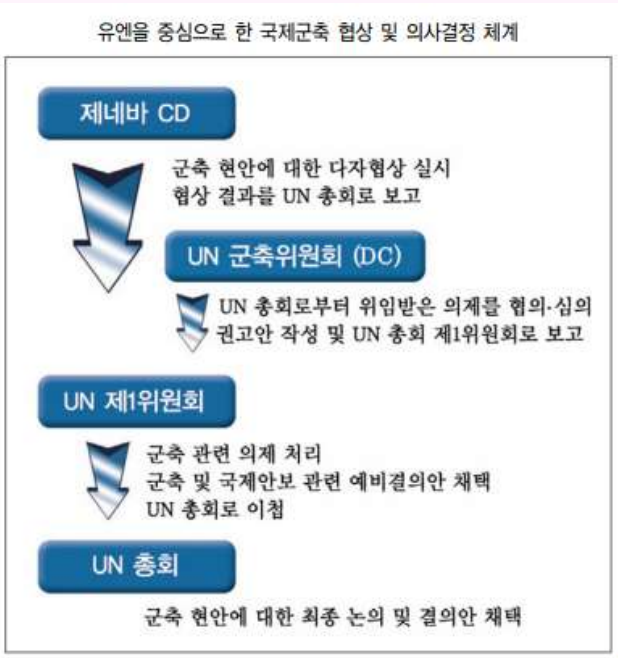

또한 UN은 국가 간 군비(軍備) 투명성 보장을 위해 총회 결의에 따라 군사비지출보고제도(Instrument for Reporting Military Expenditures)와 재래식무기등록제도(Register of Conventional Arms)를 시행하고 있다.

군사비지출보고제도는 '국가 간 군사비를 비교하여 군비경쟁을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매년 군사비 지출 현황을 UN에 보고하는 제도다. 제35차 UN 총회 결의에 따라 198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재래식무기등록제도는 재래식 무기의 수출입 실적 및 보유 현황, 국내 생산을 통한 조달 현황, 정책 수립 동향 등에 관한 배경 설명서를 UN에 등록하는 것으로 무기 이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46차 UN 총회 결의에 따라 199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등록 대상 무기는 전차, 장갑차, 야포, 전투기, 공격용 헬기, 전함, 미사일·발사대 등 7종이다.

위의 두 제도는 군사적 투명성과 개방성 증대를 통한 국가 간 신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국이 배경 설명서 등의 작성 없이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출하고, 제출 내용에 대한 검증 제도도 갖추지 못한 한계가 있어 최근에는 이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4. 관련 기구 및 협약

(1) 핵확산금지조약 Non-Proliferation Treaty (NPT)

NPT는 런던, 모스크바, 워싱턴에서 1968년에 조인된 조약이며, 거의 세계 모든 국가가 가입하고 있다.
NPT는 다음과 같은 중요 네 가지 주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핵보유국은 핵무기 및 관련기술 또는 이에 대한 관리를 양도하거나 다른 당사국이 이를 획득하는 것을 원조할 수 없으며, 핵비보유국은 핵무기를 접수하거나 개발할 수 없다. 둘째, 핵비보유국의 핵시설에서 생산되거나 사용되는 분열성 물질이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핵 안전조치가 수립된다. 이러한 안전조치는 국제원자력 기구(IAEA)에 의해 이루어진다. 셋째, NPT는 모든 당사국이 평화적 목적으로 핵에너지를 연구, 생산 및 사용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동 조약은 핵보유국이 핵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 핵비보유국을 원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 NPT는 모든 당사국이 성실히 핵군축에 관한 조치의 협상과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하의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에 관한 조약의 협상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핵 확산금지, 핵무기 완전 부재 등도 실현되지 않았고 핵군축에 관한 조치에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현재 핵 위협국가로 알려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2003년 탈퇴하였고, 또 다른 핵 위협국가인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미 가입국가로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2) 화학무기 금지조약 Chemical Weapons Convention

이 협약은 1993년 프랑스 파리 시에서 조인되었으며, 1997년 65개국이 비준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
화학무기금지협약은 대규모 살상무기 전체를 검증을 통하여 금지한 첫 번째 국제조약이다. 이 조약은 화학무기의 사용과 이전·비축·획득·개발뿐만 아니라 생산을 금지하며 협약에서 금지하지 않는 목적으로의 사용을 제외한 독성 화학물질의 사용 및 생산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화학무기는 협약 발효 후 10년 이내에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협약 발효와 동시에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이행을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화학무기금지기구가 정식으로 발족했다.
하지만 세계 3대 화학무기 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북한 중 북한은 이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고 나머지 두 나라는 가입했음에도 아직까지 1,2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약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3) 비인도적 재래식 무기 금지협약 Inhumane Weapons Convention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다자조약으로서 1981년 조인되었고 1983년부터 발표되었다.
비인도적 재래식 무기 금지협약은 3가지 의정서로 구성되어있다.
제1의정서는 인체 내 X선에 의한 탐지 불능파편에 의하여 사람을 상해하도록 고안된 모든 무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제2의정서는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 유사 장치의 무차별적인 사용 및 민간인 또는 민간인 집단에 대한 사용을 금지한다. 제3의정서는 민간인 집단 및 목표물에 대한 소이성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며, 민간인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내에 위치한 군사적 목표물에 대해 이를 공중 투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4의정서는 눈에 영구적인 실명을 일으키도록 특별히 고안된 레이저 무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이 협정은 적용대상국이 광범위하고 점차 규제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나 재래식 무기 전반, 특히 소형무기의 거래를 규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재래식 무기금지조약이라 볼 수 없다. 이는 이 조약의 기본적 취지가 특정 무기 사용으로 인해 전쟁수행 시에 불필요한 살상 및 고통을 줄이자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라 볼 수 있다.

(4) UN 군축위원회(DC)

1952년에 조직된 군축위원회는 1978년 UN 군축특별총회의 결의에 따라 군축 분야에 대한 심의와 토의 기구로 재가동되었다. 모든 UN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회 산하기구로, 매년 5월 약 3주간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비핵지대, 실질적 군축, 비핵화 방법과 수단, 재래식 무기 분야의 실재적 신뢰구축 방안 등의 의제에 대해 토의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5) 제네바 군축회의(제네바CD)

1978년 제1차 UN 군축특별총회의 결정에 따라 1979년 제네바에 설치된 다자간 군축협상기구로 2006년 현재 65개 회원국이 있다. UN의 직속기구는 아니나 UN 정규예산으로 운영되고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UN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군축회의는 연중 6개월간 회기로 개최하며 모든 다자간 군비통제와 군축 문제를 다룬다. 현재는 핵무기 경쟁의 중단과 핵 군축, 핵전쟁 방지, 외기권 군비경쟁 방지, 비핵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 및 위협의 불사용 보장, 새로운 형태의 WMD 개발 금지, 포괄적 군축 계획 같은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군축회의 주도로 다양한 조약이 체결되어 왔으나 이후 핵무기 군축, 핵물질 생산 금지 조약, 외기권 군사화 방지 등의 핵심 의제에 대한 입장 대립으로 공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5. 용어정리

▶ 국제연합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유엔헌장은 유엔의 ''헌법''으로,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제반 기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조약으로서 주권과 평등, 국제관계에서의 무력 사용금지 및 모든 인간의 기본권 향유에 이르기까지 국제 관계의 주요 원칙을 성문화 했다.

▶ 군비통제

군비 감축 내지 축소(Arms reduction)
군비제한(Arms limitation)
군축 또는 무장해제(Disarmament)
군비관리(Arms management)
신뢰구축(CBM :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군비동결(Arms freeze)

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

단 군비통제는 군축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나 상위 개념은 아니다. 오늘날 UN에서도 군비통제와 군축이 상호호완 적이며 보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이를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군축: 단순히 군비축소의 줄임말이 아니라 Disarment 무장해제, 즉 완전 해체를 뜻한다. 이는 이상적인 개념으로 통용되기 때문에 실상 군비 통제를 대체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 WMD (대량 살상무기 Weapons Mass Destruction)

Atomic / Biological / Chemical / Radiological / Nuclear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재래식무기와 비교된다(핵무기 : 재래식 폭탄과 비교해 폭발력 이 백만배 이상이며 방사선피해를 동반한다). 특징으로는 쓰임의 양면성을 들 수 있다. 원료를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곳에서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보유량의 은폐가 가능하며 정확한 추정이 불가능하다. WMD는 만들기 쉽고, 이용이 용이하며 효율성이 좋아 많은 국가들이 국방력 강화를 위해 보유하고 싶어 하지만 국제 사회는 평화를 위해 확산방지체제를 지향한다.

▶ 재래식 무기

핵무기, 화학무기 및 생물학무기를 제외한 무기의 총칭으로서 통상무기 또는 비핵무기라고도 한다. 재래식 무기는 선박, 항공기, 장갑차, 총 비핵 미사일, 비핵 탄두 및 육·해·공군 그리고 다른 인력과 그것들을 배치하는 전략-통신, 기후 및 통제 기지 및 연결망을 포함한다.

*소이성무기: 재래식 무기 중 하나로 화재를 일으키거나 사람에게 화상을 입히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무기이다.

▶ 비확산

WMD의 수평적(양적), 수직적(질적) 확산 방지활동 (개발, 생산, 비축, 배치, 사용 이전 등)
외교적 협상과 활동을 통해 목표 달성 추구 (조약, 협약, 국제 레짐 등)

*국제 레짐: 일반적으로 국제관계의 특정 쟁역에 있어서 국가들에 의해 합의가 된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규칙을 지닌 제도로서 관습을 포함한다.

▶ 핵보유국

미/러/영/프/중 외 인도, 파키스탄, 이란, 북한, 알제리, 이스라엘, 이라크 위의 국가들도 핵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5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불량국가로 칭하며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